

의안 번호	1313
----------	------

경 기 도 의 회
제 283회 정례회

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

2013. 12. 16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목 차

I. 심사경과	3
II. 제안설명의 요지	4
III. 검토보고	4
IV. 질의 및 답변요지	4
V. 토론요지	4
VI. 심사결과	4

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년 12월 16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-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: 2013년 11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경기도지사

다. 회 부 일 : 2013년 12월 3일

라. 상정일자

○ 경기도의회 제283회 정례회

1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(2013. 12. 6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

2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(2013. 12. 9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3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(2013. 12. 10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4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(2013. 12. 11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,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

5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(2013. 12. 16.)

-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

II. 제안설명의 요지 : 생략

(총괄제안설명자 :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동근)

III. 검토보고 : 별첨 1

(검토보고자 : 특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이훈재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생략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별첨 1

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, 이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	2013년도 기정 기금운용계획	증 감 액	비 고
기 금	1,237,272	1,148,767	88,505	

※ 예산규모는 총계규모로 작성

【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감 내역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수 입	지 출
합 계	88,505	88,505
기 금	☐ 통합관리기금 70,000 • 예수금 70,000	☐ 통합관리기금 70,000 • 예탁금 70,000
	☐ 중소기업육성기금(운전자금) -	☐ 중소기업육성기금(운전자금) - • 예탁금 50,000 • 예치금 △50,000
	☐ 재난관리기금 18,505 • 예치금회수 18,505	☐ 재난관리기금 18,505 • 예탁금 20,000 • 예치금 △1,495

-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의하면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기금의 금고 예치금 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중소기업육성기금(운전자금)에서 500억원, 재난관리기금에서 2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

II. 검토의견

-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
 - 세수 감소에 따라 기금여유자금을 일반회계 용자금으로 전환하여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
 - 중소기업육성기금(운전자금)에서 500억원, 재난관리기금에서 200억원, 총 7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
- 경기도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생산적으로 통합관리하고, 용자를 통한 투자사업의 지원하는 것은 현재 도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
 - 일자리 창출과 도내 중소기업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

□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○ 제5조(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)

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- 특히,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3년 제1회 추경 시 요구하였던 변경안을 재요구한 것으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인 만큼 재요구 시기와 사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짐